

제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10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101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가소334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0. 6. 10.

판결 선고 2020. 6. 24.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가소334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2. 14.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서 중고 노래방 반주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이를 대금 21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매매대금 21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 과정에 위 판매자는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기도 한 사실, 그런데 위 판매자는 반주기를 보내주지 않았고, 이후 연락도 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또는 성명불상의 판매자의 중고품 매매를 빙자한 사기행위의 공범으로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매매대금 21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 송금일인 2019. 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9. 5.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종철

판사류호중

판사조병대